

1. 개정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등에 관한 업무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222호, 2024. 2. 13.,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을 직할 관리재산으로 관리하도록 정비하고, 국유재산 관리사무를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무원의 직위(재산관리관 등)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 등 위임사무를 규정하며, 그 밖에 인용 법령 수정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매수된 토지를 직할 관리재산으로 관리(안 제2조제1항제4호)
- 나. 재산관리관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항, 제5조)
- 다. 소관 국유재산의 위임사무 범위 구체화 등(안 제6조)
- 라. 한국도로공사 위탁사무 관리·감독 부서 조정(제7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위임위탁규정,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청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로 하고, “법 제28조, 제29조”를 “같은 법 제28조,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제20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재산

제2조제2항 중 “특별회계 재산 등 관리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도로법」 등 개별법령에서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을 “도로·구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가”로, “관리청”을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를 “법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54조제5항제1호”를 “제54조제5항”로 하고, “민자고속국도 제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중”을 “사용 중”으로 한다.

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재산관리관”이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장 및 부서장을 말하며, 사무위임의 단계·범위에 따라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청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로 한다.

제5조제1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 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소관 국유재산을 위임하여 관리한다. 다만, 직할 관리재산 중 타 소속기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관할 지역의 지방 국토관리청 소관재산으로 본다.”로 하고, 제1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산관리관

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 국토교통부의 각 과장·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4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책임운영기관장 등)

2. 분임재산관리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제32조, 제42조 및 제53조의3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국토관리사무소장, 항공관리사무소장, 비행점검센터장, 공항출장소장,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센터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등)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재산관리관 소관 재산 중 일부를 별도의 기관장 및 부서장에게 위임하여 운용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해당 재산을 관장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위임규정 제41조제2항제2호의 각목에 따른 재산의 관리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登記·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17.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18.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19.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20.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21.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22.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3.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4.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제6조제3항 중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 중 제외된 용도폐지 관리사무”를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의 용도폐지 사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임규정에 따라 위탁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29조”를 “법 제29조 및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새로”를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로”로 하고, “관리위탁”을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위탁”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점·사용료”를 “점용료·사용료”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7조제6항 중 “도로정책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재산관리기관”을 “국유재산을 위임·위탁관리하는 기관 (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구거부지 등 “시·도 관리재산””을 “구거 등의 시·도 관리재산”으로 하고 ““직할관리 재산””을 “직할 관리재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국유재산을 위임·위탁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타 관리청과의”를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동시에 지적법의 절차”를 “동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민법 제218조”를 “「민법」 제2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법 제219조”를 “「민법」 제219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구거부지”를 “구거”로,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20조 중 “점·사용허가기준의 준용”을 “점용·사용허가기준의 준용”으로 하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도로·구거·하천”을 “도로·구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행정재산이”를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이”로 하고,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을 “때에”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건축법 제57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4호 중 “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관리청이”를 “총괄청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수기관으로”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1항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등 관리청”을 “등의 재산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산하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7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u>관리청에</u> 위임된 사항과 <u>법 제28조, 제29조</u>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제54조제5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재산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 <u>국토교통부장관에게</u> -- <u>같은 법 제28조, 제29조</u>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직할 관리재산”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재산과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소속기관이 취득하였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2조(용어의 정의) ① ----- ----- ----- ----- ----- -----.
② “시·도 관리재산”이란 위임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u>다만, 특별</u>	1. ~ 3. (현행과 같음) 4. 「 <u>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u> 」 제17조, 제20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u>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재산</u> ② ----- ----- ----- -----.
	-----. <u>다만, 「도</u>

회계 재산 등 관리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현재 또는 종래의 지목이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인 재산

2. (생략)

3. 소유자 없는 부동산 또는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재산을 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 권리보전한 재산

4. (생략)

③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이란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행정권한이 위탁된 고속국도(민자고속국도 제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 2. (생략)

3. 고속국도로 사용중인 재산

4. ~ 7. (생략)

<신설>

로법」 등 개별법령에서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1. ----- 도로·구거-----

2. (현행과 같음)

3. 소유자가 -----관리·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
----- 법제14조에 따라 -----

4. (현행과 같음)

③ -----
----- 제54조제5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사용 중-----

4. ~ 7. (현행과 같음)

④ “재산관리관”이란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

제4조(보고절차 등) ① 국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결산 등 업무는 재산관리관이 분임재산관리관 으로부터 자료를 취합하여 관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직제상 1차 소속기관(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항공교통센터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책임운영기관장 등)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 되며, 본부의 각 과장·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직제상 2차 소속기관(국토관리사무소장,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철도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장 및 부서장을 말하며, 사무위임의 단계·범위에 따라 재산관리관, 분임 재산관리관으로 구분한다.

제4조(보고절차 등) ① -----

-----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할 관리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소관 국유재산을 위임하여 관리한다. 다만, 직할 관리재산 중 타 소속기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관할 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재산으로 본다.

특별사법경찰대센터장, 항공관리사무소장, 공항출장소장, 비행점검센터장 등)은 직할 관리 재산에 대한 분임재산관리관이 된다. 다만, 직할 관리재산 중 타 소속기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재산은 관할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 소관재산으로 본다.

<신 설>

1. 재산관리관

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장, 국토교통부의 각 과장·팀장(직접 관리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나.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제4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책임운영기관장 등)

<신 설>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제5조
에 따른 재산관리관 또는 분임
재산관리관은 위임규정 제41조
제2항제2호의 각목에 따른 재산
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선량
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위임재산

2. 분임재산관리관 : 「국토교통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
7조, 제32조, 제42조 및 제53
조의3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
(국토관리사무소장, 항공관리
사무소장, 비행점검센터장, 공
항출장소장, 지방철도특별사
법경찰대장, 철도특별사법경
찰대센터장, 인천항공교통관
제소장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재산관리관 소관 재산 중 일
부를 별도의 기관장 및 부서장
에게 위임하여 운용함이 효율적
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해당
재산을 관장하는 분임재산관리
관을 둘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위임사무의 범위) ① ----
-----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소
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

을 유지·보수·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법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2.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3.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4.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5.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6.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7.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8.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9.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u><신 설></u>	<u>10.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u>
<u><신 설></u>	<u>11.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u>
<u><신 설></u>	<u>12.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u>
<u><신 설></u>	<u>13.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u>
<u><신 설></u>	<u>14.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u>
<u><신 설></u>	<u>15.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u>
<u><신 설></u>	<u>16.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u>
<u><신 설></u>	<u>17.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u>
<u><신 설></u>	<u>18.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u>
<u><신 설></u>	<u>19.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u>
<u><신 설></u>	<u>20.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u>
<u><신 설></u>	<u>21.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u>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위임규정 제54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 중 제외된 용도폐지 관리사무는 관할 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행한다.

제7조(관리사무의 위탁) ① 위임규정에 따라 위탁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국유재산관리를 위탁한다.

② (생 략)

③ 새로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

· 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22.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23.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24.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의 용도폐지 사무-----

-----.

제7조(관리사무 위탁) ① 법 제29조 및 위임규정 제54조제5항-----

-----.

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도로공사 관리재산으로

과 동시에 관리위탁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사용료, 변상금 등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예산형편에 따라 그 차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위탁업무는 법 제29조제3항 및 위임규정 기준에 따르되,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합의하여 위탁재산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도로정책과장이 소관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한다.

제9조(합병·겸용재산의 관리) ① 경지정리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재산관리기관 간의 재산이 합병된 때에는 지분면적이 많은 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구거부지 등 “시·

활용하기 위해 새로 -----
----- 한국도로공사에 관리
위탁----.

④ -----
점용료·사용료-----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

⑥ -----

--도로관리과장-----
-----.

제9조(합병·겸용재산의 관리) ① -----
----- 국유재산을 위임·위
탁관리하는 기관 (이하 “관리기
관”이라 한다) -----

-----.

② ----- 구거 등의 시·도 관

도 관리재산”이 분필되지 않아
일반국도 등 “직할관리 재산”과
겸용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경
계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관리가 각각 위임된 것으로
보되, 권리보전조치 등 대표업
무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제10조(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① 국유재산을 위임·위탁관리
하는 기관 간에 재산교환,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
의하여 재산을 인계·인수하고
소관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2조(폐도부지의 관리) ① 도로

법에 따라 도로구역에서 제외된
폐도는 시·도 관리재산으로 관
리한다. 다만, 고속국도 및 관리
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도로점용허가 기간 중에 폐
도부지가 된 경우에는 피허가자
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도로
점용허가 잔여기간에 한하여 국
유재산 사용허가로 전환되도록

리재산-----

----- 직할 관리재산-----

-----.

제10조(관리기관간 재산의 이관)

① 관리기관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폐도부지의 관리) ①

「도로법」-----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거나, 새로이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④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장래 활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유하여야 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의 협의를 거쳐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은 직접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전환 취득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등을 국토교통부로 관리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미 도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타 관리청과의 재산정리를 위하여 관리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잔여지 등의 관리) ① (생략)

②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당해사업에 재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

----- 새로 -----
----- . -----

(4) _____

_____ . _____ 법 제8

조제3항

_____ .

제15조(관리전환 취득의 제한) --

사용 중인 재

산으로서 다른 중앙관서의 장과

제16조(잔여지 등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 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재산은 직접 관리·처분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8조(토지의 지목변경) 손실보상으로 취득한 도로, 하천, 수도, 유지 등의 공공용재산은 사업준공과 동시에 지적법의 절차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이 상이하거나 토지의 사용목적 변경으로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즉시 지목이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조건부 사용허가) ① 행정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민법 제218조에 따른 수도 등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 · 선로 등을 설치하

법 제8조제3항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토지의 지목변경) -----

----- 동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조건부 사용허가) ① (현
행과 같음)

1. 「민법」 제218조-----

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

2. 민법 제219조에 따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3. 존속기간이 영구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용 도로, 구거부지 등에 설치하는 지상·지하 시설물로서,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않고는 시설물 설치가 심히 곤란한 경우.

② (생략)

제20조(점·사용허가기준의 준용) 국유재산상에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허가기준이나 사용료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점용허가 등 타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도로 등 원상복구) ① 사실상 공공 기능을 상실한 도로·구거·하천 등은 특정인을 위

-----.

2. 「민법」 제219조-----

3. -----
----- 구거 -----

----- 매우 -----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점용·사용허가기준의 준용) -----

-----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제22조(도로 등 원상복구) ① -----
----- 도로 -----
----- ·구거 -----

하여 공공용재산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성이 인정되거나 공익을 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23조(용도폐지)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 토지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용도폐지 구비서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보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등기부등본(총괄청에 인계한 후에는 관리청이 변경된 등기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이 ----- 때에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건축법」 제57조제1항-----
-----.

-----.

제25조(용도폐지 구비서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총괄청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인계하는 경우

부까지 확인, 보관)

제27조(손실보상 처분협약)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발생소지와 대체시설여부를 검토한 후에 협약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무상귀속 등 협약) ① 국유재산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협의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9. (생략)

②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중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도, 하천, 수도, 공항 등 시설이나 동 시설과 기능이 겸용되는 공공시설(제방도로, 복개도로 등)의 토지는 국가에 우선 귀속되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에는 인수기관으로 -----

제27조(손실보상 처분협약)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무상귀속 등 협약) ① 「국유재산법」-----

1. ~ 9. (현행과 같음)

② 새로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전체 또는 지분을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도폐지한 재산은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총괄청에 인계하거나 매각(특별회계 등 관리청이 처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여야 한다.

제30조(취득재산의 전산관리) ①
(생략)

② 손실보상, 미불용지보상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 명의로 재산을 취득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산하공사, 소속기관 등 모든 기관은 취득원인, 취득금액, 취득일 등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국유재산대장(이하 “국유재산대장”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④

등의 재
산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제30조(취득재산의 전산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산하기관

제31조(재검토기한) -----
 ---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u>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u>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u>12월 31일</u>까지를 말한다)마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u>1일</u> ----- ----- -- <u>7월 31일</u>----- ----- -----
--	--